고 성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L A	기 관 의 장
선	
람	
日	



제590호 2023. 8. 8.(화)

조 례 고성군 조례 제2816호 고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2 고성군 조례 제2817호 고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9 고성군 조례 제2819호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고성군 조례 제2820호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39 고성군 조례 제2821호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 고성군 조례 제2822호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0 고성군 조례 제2824호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53 고성군 조례 제2825호 고성군 농어업 ·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56 卫 시 공 卫 고성군 공고 제2023-1296호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회					
람					

발행: 고성군, 편집: 인구청년추진단(670-2642, 행정 2642)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근

2023년 8월 8일

고성군 조례 제2816호

고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 (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채무보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사업계획서
 -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 3. 그 밖의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발급)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미리 주채무자에 대해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확보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확보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다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발급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6조(보증채무의 관리) 군수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보증채무증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보증채무현황표를 매년 분기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채무보증 신청서

제 호

고성군수 귀하

주채무자

(이)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으니 이를 고성군수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사업명 (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 2. 내 용
 - 가. 채 권 자:
 - 나. 채 무 액:
 - 다. 이 자 율: 연 %
 - 라. 상화기간: 부터 까지 (년간)
 - 마. 상환계획:
- 3. 사 유
 - 가. 주채무 발생:
 - 나. 고성군 보증이 필요한 사유:
 -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 라. 그 밖의 참고사항:
- 4. 준수사항
 - 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고성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나. 고성군수는 고성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 무원, 채권자, 그 밖의 고성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 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따라 야 합니다.
 - 다. 고성군수는 나목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 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라.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고성군이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채무보증 승인 통지서

제 호

귀하

고성군수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고성군이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받았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 1. 주채무자:
- 2. 채무건명:
- 3. 채 무 액:
- 4. 이 자 율: 연 %
-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 6. 상환재원:
- 7. 담 보:
- 8. 융자재워:
- 9. 관계기관:
- 10. 채무보증 근거:
- 11. 그 밖의 참고사항:
- 12. 준수사항
 -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고성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나. 고성군수는 고성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 무원, 채권자, 그 밖의 고성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 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 에 따라야 합니다.
 - 다. 고성군수는 나목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 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라. 채권자는 고성군이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 마.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고성군이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채무보증서 발급 신청서

제 호

고성군수 귀하

채권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 1. 주채무자:
- 2. 채무건명:
- 3. 채 무 액:
- 4. 이 자 율: 연 %
-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 6. 상환재원:
- 7. 담 보:
- 8. 융자재원:
- 9. 그 밖의 참고 사항:
- 10. 준수 사항
 - 가.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고성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나. 고성군수는 고성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 무원, 채권자, 그 밖의 고성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 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따라야 합 니다.
 - 다. 채권자는 고성군이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권자 귀하

고성군수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 1. 주채무자:
- 2. 채무건명:
- 3. 채 무 액:
- 4. 이 자 율: 연 %
-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고성군의 동의 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 6. 상환재원:
- 7. 담 보:
- 8. 융자재워:
- 9. 관계기관:
- 10. 채무보증근거:
- 11. 그 밖의 참고사항:
- 12. 준수사항
 - 가.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고성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나. 고성군수는 고성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 무원, 채권자, 그 밖의 고성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 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따라야 합 니다.
 - 다. 채권자는 고성군이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보증채무 현황표

(년도 분기)

ANA 사무사주	용도	보 증 채무액	대출 누계	직전 분기말 채무액	분기중 회수	이번 분기말 채무액	이번 분기말 연체액	이번 분기중 이자 발생액	이번 분기중 이자 상환액	이번 분기말 미수이자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근

2023년 8월 8일

고성군 조례 제2817호

고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건전한 여가선용,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야외운동기구" 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 2. "이용자" 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 3. "총괄부서" 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담당 부서를 말한다.
- 4. "관리부서" 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는 군수가 설치하고 관리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설치와 관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법령을 근거로 설치 및 관리하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부서는 해당 법령을 근거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부서로 한다.
-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 장소
 -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7조(설치기준 등)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

선하여 현지 조사 및 사전 검토 후 설치한다.

-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해야 하다.
- 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에 설치해야 한다.
- 제8조(안내문 게시) 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안내 표시문을 부착해야 한다.
 - ② 군수는 안내 표시문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 표시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③ 군수는 안내 표시문이 훼손된 경우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부착해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등) ① 군수는 매년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 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이용자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공지 후 철거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보수·철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안내 표시문(제8조 관련)

불편사힝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기 구 명								
설치년월								
관리부서								
연 락 처								

야외운동기구 사용 시 주의사항

- ○운동기구에 표시된 주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이를 준수합니다.
- ○어린이, 환자나 허약자 등 이용 제한이 있는 경우 반드시 지키고, 표 시된 운동방법을 꼼꼼히 읽고 충분히 숙지한 후 사용합니다.
- ○사용 전 운동기구의 이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 ○기구의 파손, 고장, 흔들림 상태를 확인하고 이용합니다.
- ○운동기구 설치 장소에 위험요소를 확인 후 이용합니다.
- ○낭떠러지 인근 또는 비탈길에 설치된 운동기구 이용 시 추락하지 않 도록 주의합니다.
- ○신체능력보다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공중 걷기 이용 시 두 발을 동시에 움직이는 것을 피합니다.
- ○다리 보폭을 너무 크게 하면 인대가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 ○고혈압, 안구장애 및 빈혈이 있거나 다리 힘이 약한 사용자는 거꾸로 매달리기 기구 사용을 피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고성군)

작성자:	작성자:				번호	00)읍·면-(-00마을-부여번호	
위 ㅊ	tl					총골	말부서		
유형	형	ex)경로당				설치	티부서		
설치기구	치기구 총()종/(관리	비부서		
설치일자	₹					설치	미면적		
관 리						실	태		
						仑	ţ	태	
	기	구 명	양호		보 통		불 량		기타사항
ex)허리를	돌 2	171			-	\checkmark			
현장사진	!(전	!체적인 조망 시	진 첨	부)					

⊋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현장사진(운동기구 1점의 사진 첨부)	

편권이시		점 검 자		# J III O	비고	
점검일시	소 속	직 급	성 명	점 검 내 용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근

2023년 8월 8일

고성군 조례 제2818호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는 등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고성군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람"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말한다.
- 제4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을 말한다.
- 제5조(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인 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가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확인이 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청구인대표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서면에 의해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 청권을 위임한 경우 군수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위임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에 따른다.
-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발급한다.
-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와 제5조제4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수임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서명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받거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받으려는 청구인대표자와 수임자는 청구인서명부 또는 전자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해야한다.
 - 1. 청구인대표자: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 2. 수임자: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서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 제8조(서명과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법 제10조제3항의 요청에 따라 주민이 청구인서명부에 어 서명하려는 경우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4항의 요청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 1. 성명
 - 2. 생년월일
 - 3. 주소 또는 체류지
 - 4. 서명 연월일
 - ②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읍·면별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리·반 단위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군수에게 제출(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청구인 대표자가 군수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

- 하는 경우 읍 · 면별로 열람 기간,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이 열람하려는 경우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 부분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주민이 열람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 제11조(이의신청)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2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 제13조(주민투표청구의 수리)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에 대해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보다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이 더 늦은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다.
 -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
 -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
 -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4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4조(고성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고성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소속 부서장
 - 2. 고성군의회 의원
 - 3. 관내에 주소지를 둔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언론인, 종교인, 사회단체 대표 등 행정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
 - ② 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 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 제15조(의장의 직무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6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심의회의 회의 소집시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 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17조(심의회의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 담당이 된다.
- 제18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9조(투표운동의 제한)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1. 야간호별방문: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 2. 야간옥외집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다만, 휴대용 확성기만을 사용하는 경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8항,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3조제2항, 제18조의2제3항, 제26조에 따른 공고는 고성군 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하나 이상과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게시 또는 게재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 별지 제1호서식 】

청	구인] 대표자	·증명/	서 교	2부신청서	
청구인	성명		생년·	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			[] 신청	[] 핕] 요없음	
실시구역 변경	<	변경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 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

-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 재하고 별지로 작성
- 4.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
-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 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 별지 제2호서식 】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기간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 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X	너명요청권	! 위임	신고서	}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약	일			
70 USIM	주소			(전:	화번호	፤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u>]</u>		
수임자	주소			(전	화번호	፮ :)
	기간	년 월	일부	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1		
	주소			(전	화번호	፩ :)
	기간	년 월	일부	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 제10)조제3항과 「그	고성군 주	민투표 2	즈례 _」	제52	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	이 청구	'인대표자의 서	명요청권	을 위임히	l 였음	을 신	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역	민대표자	(⁾	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고 성 군 수 귀하

-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 별지 제4호서식 】

		서명요청	권 ·	위임신	고증	5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	성명		생님	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	화번.	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	월일				
	주소				(전:	화번.	호 :)
♪olっl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	월일				
	주소				(전:	화번.	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	투표법	」 제10조제3학	항과	「고성군	주민	투표	조례_	제5조	
제5항에 대	다라 위	와 같이 청구	¹ 인대3	표자의 ٨	1명요>	청권 9	의 위역	임사실을	
신고하였으	으며, 수	누임인은 서명	요청권	<u></u> 이 있음	을 증기	경합।	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023년 8월 8일(화)

■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주민투표의 청구 (

청구인서명부

서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고성군 ○○읍・면(○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 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 3. 고성군 ○○읍·면(○책중 ○권) 란에는 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 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리·반으로 작성한다.

청구인서명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 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 3.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외국인 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 인
-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 재하고 별지로 작성

■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०]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	월일			
신 성	긴	주소			(전화박	번호:)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2023년 8월 8일(화)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 작성요령
 -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근

2023년 8월 8일

고성군 조례 제2819호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로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운동장·체육관 등의 시설을 말하며,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3. "전용료" 란 전용사용자(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4. "연습사용료"란 연습사용자(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5.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6. "어린이" 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제1항 전단 중 "체육시설(경기장등)"을 "체육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연습사용자는 연습사용료를 납부하고 연습사용권을 발급받으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인이상 경합 시에는"을 "둘 이상일 경우"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동호인등 다수인"을 "동호인 등 여러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전시등"을 "전시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국경일 · 기념일 등 각종 행사
 - 7. 그 밖의 경기 · 행사
-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조의2(장애인 우선 사용) 군수는 반다비체육문화센터를 장애인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의 제목 "(시설의 개방)"을 "(체육시설의 개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개방계획을 수립하여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체육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경우 연간·월간·주간·일간 주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성군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고지하거나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제3항 중 "운동기구와 제20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를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을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방제한사유"를 "사유로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개방제한 사유"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 제7조의 제목 "(사용제한)"을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를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제4호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장 거절 및"을 "시설의 입장을 제한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문란케"를 "문란하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체육시설의 보호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하계(3월부터 10월까지를 말한다)
 - 가. 조간: 05:00 ~ 08:00
 - 나. 주간: 08:00 ~ 19:00
 - 다. 야간: 19:00 ~ 23:00
 - 2. 동계(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말한다)
 - 가. 조간: 06:00 ~ 09:00
 - 나. 주간: 09:00 ~ 18:00
 - 다. 야간: 18:00 ~ 23:0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체육시설 종류에 따라 사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군수는 체육시설 사용자에게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 ③ 체육시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를 삭제한다.
-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본다.
-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2.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체육관련 행사·강습·훈

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제13조제2항제5호 중 "고성군"을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제10호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로 하며, 같은 항제11호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호"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항제13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제17호 중 "가족"을 "가족을 위한 행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그 밖에 체육시설의 특성 및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행사
 - 19.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에서 체육관련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20.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위한 행사
 - 21.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사
 -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습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9. 「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
- 1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2.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1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 14.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제14조제1항제1호 중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자"를 "사용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연습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20조의 제목 "(체육지도사의 배치)"를 "(체육지도자의 배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체육지도사"를 "체육지도자"로 한다.

제22조 중 "구성 운영"을 "구성·운영"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5조 중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단체"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용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1 사용료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반다비체육문화센터 사용료는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23.8.8>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1.기본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 별도 가산)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사	 용 료			
시	설별	시 간/시 기	사용구분	기준	평 일	토요일 및 공휴일	비고		
				x 7l	체육경기	1회 3시간	60,000	80,000	
		조 간	체육경기 외	66	100,000	120,000			
	ネコ자	ス フレ	체육경기	"	120,000	150,000			
	축구장	주 간	체육경기 외	66	200,000	250,000			
		야 간	체육경기	"	80,000	100,000			
		약 신	체육경기 외	"	130,000	160,000			
종		조 간	체육경기	1회	10,000	13,000	│ -·육상경기장:		
조이하네이건도이자이		또 신	체육경기 외	"	15,000	20,000	- 1일(조간,주간,		
훋	육 상	ズ 71	체육경기	"	40,000	55,000	□ 1 월(포진, 구진, - 야간)사용시		
장	육 상 경기장	주 간	체육경기 외	"	60,000	80,000			
		야 간	체육경기	"	15,000	20,000	-각 요금을 하자 전요하		
		약 신	체육경기 외	46	30,000	40,000	─_합산 적용함 ─_		
		하절기	전지훈련	1일 1동	30,000	30,000			
	동 계 훈 련 ⁻ 합숙소 ((3월~10월)	전지훈련 외	"	40,000	50,000			
		숙소 동절기 숙소 (11월~다음 해2 월)	기 전지훈련 "	40,000	40,000				
			전지훈련 외	66	50,000	60,000			
		₹ 71	체육경기	1회 3시간	50,000	80,000			
		조 간	체육경기 외	66	90,000	140,000			
체	육원	ズ 71	체육경기	66	60,000	90,000	읍.면에 설치된		
체 공	원	주 간	체육경기 외	66	100,000	150,000	읍.면에 설치된 -체육공원을 말함		
		야 간	체육경기	66	50,000	80,000			
		약 신	체육경기 외	66	90,000	140,000			
		ズ フ ト	체육경기	1회 3시간	50,000	80,000			
		조 간	체육경기 외	"	90,000	140,000			
OF.	야 구 장	71	체육경기	"	60,000	90,000			
^o f		주 간	체육경기 외	"	100,000	150,000			
		ot 7t	체육경기	"	50,000	80,000			
		야 간	체육경기 외	"	90,000	140,000			
전 전	_ 천 후		체육경기	1회 2시간	20,000	30,000	 조명포함		
테니	천 후 스장	_	체육경기 외 " 30,000 45,000		□ 9 素 易				

					사	<u>용</u> 료				
시	설별	시 간/시 기	사용구분	기준	평 일	토요일 및 공휴일	비고			
		1	체육경기	1회 3시간	50,000	80,000				
	조 간	체육경기 외	66	90,000	140,000					
	인조	1	체육경기	"	60,000	90,000				
	잔디 축구장	주 간	체육경기 외	"	100,000	150,000				
		1	체육경기	"	50,000	80,000				
		야 간	체육경기 외	"	90,000	140,000				
			체육경기	1회 3시간	25,000	35,000				
스		조 간	체육경기 외	"	35,000	45,000				
玊			체육경기	"	30,000	40,000				
츠 타 운	풋살장	주 간	체육경기 외	"	40,000	50,000				
운			체육경기	"	25,000	35,000				
		야 간	체육경기 외	66	35,000	45,000				
			체육경기	1회 3시간	25,000	35,000				
			조 간	체육경기 외	"	35,000	45,000			
			체육경기	"	30,000	40,000				
	족구장	주 간	체육경기 외	66	40,000	50,000				
		야 간	체육경기 되	"	25,000	35,000				
			체육경기 외	"	35,000	45,000				
			제육경기 최	1회	8,000	10,000				
		조 간	체육경기 외	"	15,000	25,000	-			
. 1. n	-11 0 -11	주 간	체육경기	"	30,000	40,000				
실내	체육관		체육경기 외	"	60,000	100,000				
		야 간	체육경기	"	12,000	15,000	·읍.면에 설치된			
		ਮ ਦ	체육경기 외	"	30,000	40,000	체육관은			
		조 간	체육경기	1회	90,000	100,000	- 실내체육관			
여	두	_	체육경기 외	"	100,000	110,000	_ 사용료 기준을			
전	역 도 전 용 경기장	ㄱ ㅗ 전 용	ㄱ ㅗ 전 용	전 용	주 간	체육경기	"	95,000	105,000	
경	기장	· –	체육경기 외	"	105,000	115,000	다름			
					야 간	체육경기	"	130,000	140,000	
			체육경기 외	1회	140,000 20,000	150,000	-·1일(조간,주간			
		조 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1외	30,000	30,000 50,000	- 야간) 사용시			
국	· 민		세육경기 되	"	50,000	70,000	각 요금을			
체	국 민 ⁻ 체 육 센 터 -	육 주 간	제육경기 체육경기 외	"	100,000	150,000				
센		터 야 간	세육경기 되	"	20,000	30,000	_합산 적용함			
			체육경기 외	"	40,000	50,000				
			체육경기	1회	8,000	10,000				
		조 간	체육경기 외	" 1 조	15,000	25,000				
	다비		체육경기	"	30,000	40,000				
	육문화	주 간	체육경기 외	"	60,000	100,000				
센	센 터 -		체육경기	"	12,000	15,000				
		야 간	체육경기 외	"	30,000	40,000	1			

- 가. 체육시설별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실내체육관, 전천후 테니스장, 역도전용경기장, 국민체육센터, 반다비체육문화센터
 - 조간(06:00~09:00), 주간(09:00~18:00), 야간(18:00~23:00)
 - 2) 축구장, 육상경기장, 야구장, 스포츠타운, 체육공원
 - 가) 하계(3월부터 10월까지를 말한다)
 - 조간(05:00~08:00), 주간(08:00~19:00), 야간(19:00~23:00)
 - 나) 동계(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를 말한다)
 - 조건(06:00~09:00), 주건(09:00~18:00), 야건(18:00~23:00)
- 나. "체육경기" 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또는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 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를 말한다.
- 다. "체육경기 외"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시회, 집회 등 체육경기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2. 전용사용료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스포츠타운, 체육공원, 역도전용경기장, 국민체육센터, 반다비체육문화센터, 야구장, 전천후 테니스장 공통 적용)

사용기간별	사 용 료	비	고
10일 이내	(기본사용료 × 사용일수)		
10일 초과 20일 이내	(기본사용료 × 10일) + (기본사용료 × 10일 초과일수 × 0.9)	A	
20일 초과	A+ (기본사용료 × 20일 초과일수 × 0.8)		

3. 연습사용료 (부가세 포함)

시 설 별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고
실내체육관,	개 인	1회 2시간	300원	
국민체육센터, 반다비체육문화센터	단 체	1회 2시간	3,000원	

^{※ &}quot;단체"는 1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부대시설 사용료

(부가세 포

함)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스포츠타운, 체육공원, 역도전용경기장, 국민체육센터, 반다비체육문화센터, 야구장, 전천후 테니스장 공통 적용)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교
○ 경기중계료 - TV 중계 - 라디오 중계 - 녹화 또는 녹음	1일	10,000원 5,000원 각 경기중계료의 2분의 1	
실 내 체 육 관, 이 전기 및 역도전용경기장, 수도 국민체육센터, 반대체육문화센터	1일 1회	30,000원	- 10일 초과 전용사용 자에 대하여는 초과 일수 당 100분의 50 을 경감하여 적용함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고
ı	1 正		小 5 显	11 11
	실내체육관,			
○ 난방 및	국민체육센터,	1시간	30,000원	
냉방시설	반다비체육문화센터			
00,15	역도전용경기장	1시간	20,000원	
	축 구 장	1회 3시간	25 000 9]	종합운동장 및
	五 丁 78	1외 3시신	25,000원	스포츠타운
○조명시설	야 구 장	1회 3시간	25,000원	
07015	풋 살 장	1회 3시간	20,000원	스포츠타운
	체 육 공 원	1회 3시간	25,000원	
○ 영화촬영	○ 영화촬영		10,000원	
				- 1m² 미만은
				1m²로 한다.
		게시면적m²당		- 게시기간: 최대 1개월
○ 선전광고	. 게시	1등급	5,000원	(기간 조정 가능)
		2등급	4,000원	- 1등급 : 본부석 정면
				- 2등급 : 본부석
				중심의 좌우

[별표 2] 삭제<개정	2023.8.8.>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근

2023년 8월 8일

고성군 조례 제2820호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 진 등을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3.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제4조 중 "법 제34조제1항"을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23. 8. 8.>

과태료 부과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위반행위를 한 경 우에 적용한다.
- 라. 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 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 마. 어떤 위반행위든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하지 아니한다.

2. 과태료의 부과 기준

		(Ę	구과금 아위:탄	번 원)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	「지역보건법」			
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	제34조제2항			
하는 행위를 한 자	제1호			
가. 「의료법」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00	200	300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ㆍ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100	200	300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보	「지역보건법」	100	200	300
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을	제34조제2항			
사용한 자	제2호			
10 6 1				
3. 「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지역보건법」	1 000	2 000	3,000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제34조제1항	1,000	2,000	3,000

[별지 제1호서식]삭제 <2023. 8. 8.>	

(별지 제2호서식)삭제 <2023. 8. 8.>	

[별지 제3호서식]삭제 <2023. 8. 8.>	

(별지 제4호서식)삭제 <2023. 8. 8.>	

	(별지 제5호서식)삭제 <2023. 8. 8.>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삭제 <2023. 8. 8.>	

(별지 제7호서식)삭제 <2023. 8. 8.>	

(별지 제8호서식)삭제 <2023. 8. 8.>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근

2023년 8월 8일

고성군 조례 제2821호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근

2023년 8월 8일

고성군 조례 제2822호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고성군민을 대상으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를 "고성군민 (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로, "보험을"을 "보험 또는 공제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군수와"를 "군과"로, "보험 회사를"을 "보험회사 및 공제회 등을"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의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의 제목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군민들"을 "군민"으로, "홈페이지"를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① 보험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한 보험기관에서 정한 보상 범위와 한도액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보험료는 고성군의 예산의 범위에서"를 "군수는 보험료

를" 로, "납입"을 "납입하여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보험금 신청)"을 "(보험금 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상속인"을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으로, "신청"을 "청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외 된다"를 "제외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보험가입"을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신청을"을 "청구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급현황을 군수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근

2023년 8월 8일

고성군 조례 제2823호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을 "(지역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누리집"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따르되 개정 규정이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지역계획의 경과조치) 종전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지역계획으로 본다.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근

2023년 8월 8일

고성군 조례 제2824호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조의 5 및 별표1 제4호 거목"을 "영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거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0.5미터이상"을 "0.5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3조의2제6항 중 "5개"를 "3개"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나목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을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해야 한다. 제1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영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제41조 및 제4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

를 위하여 고성군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 및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고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 2.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 3.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 4.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 5.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 6. 건축물의 점검,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 7.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2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 · 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 3. 법 제113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50
- 4. 그 밖에 수입금
-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구조안전·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 점검 비용
- 2.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보수·보강 등에 필 요한 비용의 보조 및 융자 비용
 - 3.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조사 · 점검 비용
 - 4.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 5.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관련 실태조사 · 검사 및 안전점검 비용
 - 6. 「건축물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 비용
 - 7. 제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 및 점검 비용
- 8.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 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후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농어업 ·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근

2023년 8월 8일

고성군 조례 제2825호

고성군 농어업 ·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정의) ① "농어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② "농어촌"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③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 ④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5) "농어업 관련 단체" 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단체
 -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농어업인 단체
- 3. 자조(自助)·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어업인의 공동조직(비법인 포함) 등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촌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업·농어촌 진흥시책의 수립·추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업· 농어촌 육성 및 발전, 농어촌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ㆍ지원
- 2. 영세 또는 고령 농어업인,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에 대한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
 - 3.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어업의 육성 및 경관자원 보전
 - 4.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개발
 -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

제5조를 삭제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하여 소요되는"을 "한정하여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제3호 중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농어업인의 역량 강화와 농어업 진흥 · 육성을 위한 국 · 내외 연수 등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인, 농산물,어업인, 어선, 농·수산업"을 "농어업인, 농수산물, 어선, 농어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기관·단체"를 "단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군 단위 농어업인 단체 등 사업의 성격상 군이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를 "군이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업인등"을 "농어업인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 제4조에 따라 수립·시행된 진흥계획은 이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시행된 진흥계획으로 본다.

2023년 8월 8일(화)

고성군 고시 제2023-162호

고성군 도로명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고성군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3. 8. 4. 고 성 군 수

- 1. 고 시 일: 2023. 8. 4.
- 2. 고시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 3. 고시내용: 갈모봉 자연휴양림 숲길 및 해안가 산책길 내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 (붙임 조서와 같음)
- 4.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
 - □ 도로명 부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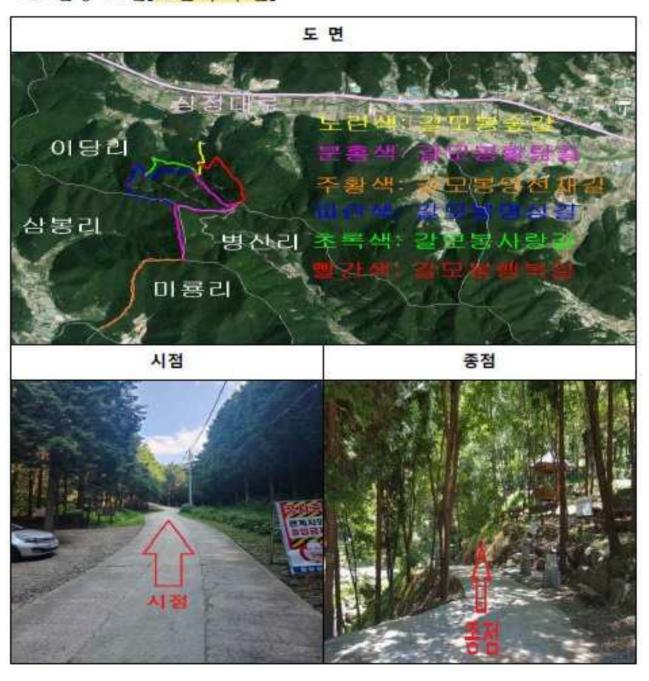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열린민원과(☎055-670-26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명부여 조서 및 도로구간 1부.

1. 갈모봉숲길

에비	부여	24,740,000	도로구간					DIAL	기초	기초
도로명	사유	유형	医野營	사자점	끊지점	길이 (m)	(m)	관할 행정구역	간격 (m)	번호
갈모봉 숲길	숲길 등 신책로 이름	길	지상 도로	이당리 1132	이당리 신146-6	476	2	경상남도 고성군	20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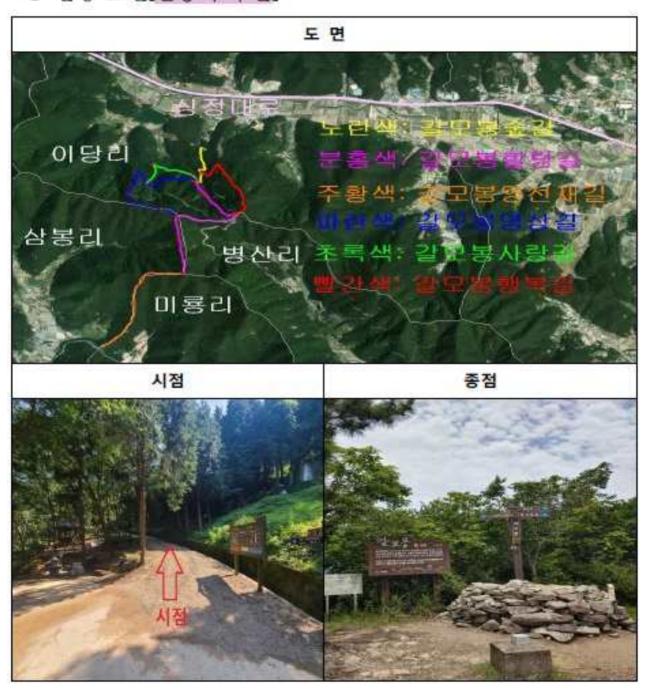
○ 현황 도면[노란색 구간]



2. 갈모봉힐링길

0 11	부여			도	로구간			과항	기초	기초
도로명	사유	유형	도 史宗형	사작점	끝지점	길이 (m)	(m)	행정투역	간격 (m)	번호
갈모봉 힐링길	숲길 등 신책로 이름	길	지상 도로	이당리 산146-6	삼봉기 신1	1,727	2	경상남도 고성군	20	1~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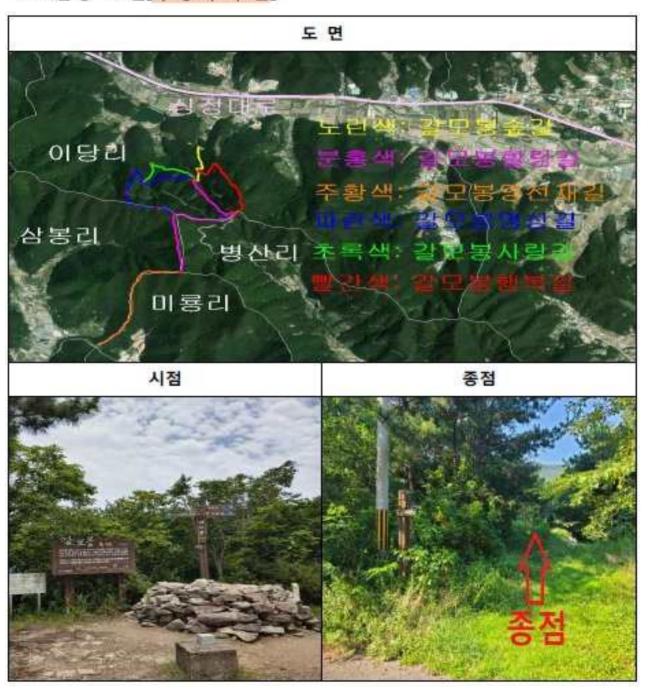
O 현황 도면[분홍색 구간]



3. 갈모봉영선재길

0월비	부여			5	로구간			7161	기초	기초
도로명	사유	유형	左架 槍	시작자점	끝지점	길이 (m)	(m)	관할 행정구역	간격 (m)	기소 번호
갈모봉 영선자길	숲길 등 산책로 이름	길	지상 도로	삼봉리 산1	미룡리 신 88-2	1,225	2	경상남도 고성군	20	1-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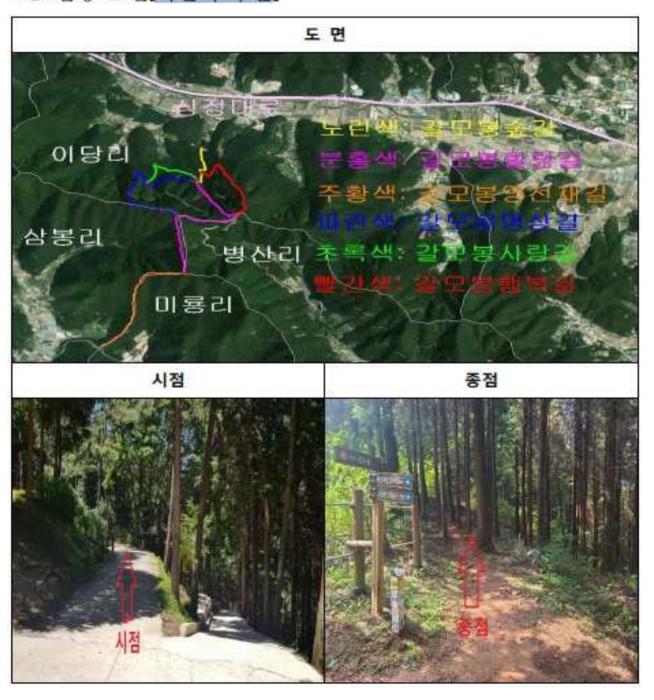
○ 현황 도면[주황색 구간]



4. 갈모봉명상길

에비	부여			도	로구간		i	과항	기초	기초
도로명	사유	유형	도 异常被	시작점	끊지점	길이 (m)	(m)	행정투역	간격 (m)	번호
갈모봉 명상길	숲길 등 신책로 이름	길	지상 도로	이당리 산146-6	삼봉리 산1	1,423	2	경상남도 고성군	20	1~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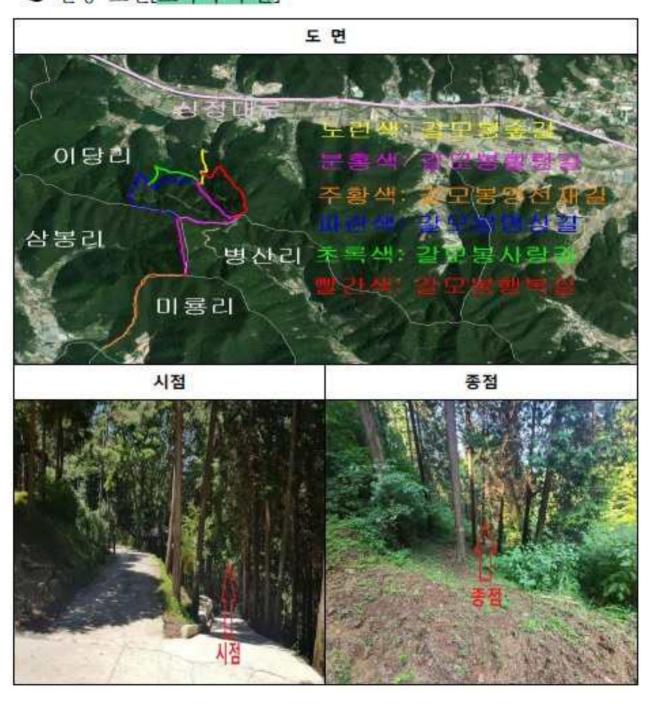
O 현황 도면[파란색 구간]



5. 갈모봉사랑길

에비	부여			도	로구간			1645	기초	刀头
도로명	사유	유형	左門曾	사작자점	끊지점	길이 (m)	等 (m)	관할 행정구역	간격 (m)	기초 번호
갈모봉 사랑길	숲길 등 신책로 이름	길	지상 도로	이당리 산146-6	이당의 산147	666	2	경상남도 고성군	20	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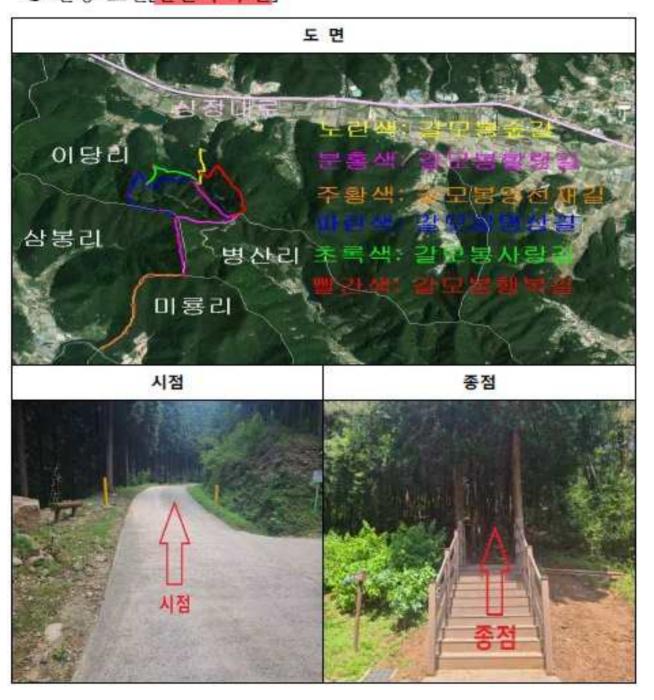
O 현황 도면[초록색 구간]



6. 갈모봉행복길

O U	부여			도	로구간			7181	기초	기초
도로명	사유	유형	左門替	사작점	끊지점	길이 (m)	(m)	관할 행정구역	간격 (m)	번호
갈모봉 행복길	숲길 등 신책로 이름	길	지상 도로	이당리 신146-4	이당의 신146-5	888	2	경상남도 고성군	20	1-90

○ 현황 도면[빨간색 구간]



7. 거북선마중길

0[1년]	부여	2000		도	로구간			과함	기초	기초
도로명	사유	유형	도로유형	사작점	끝지점	길이 (m)	(m)	행정구역	간격 (m)	번호
거북선 미중길	해인가 신책로 이름	길	지상 도로	보전리 220-6	배문리 1353	185	2	경상남도 고성군	20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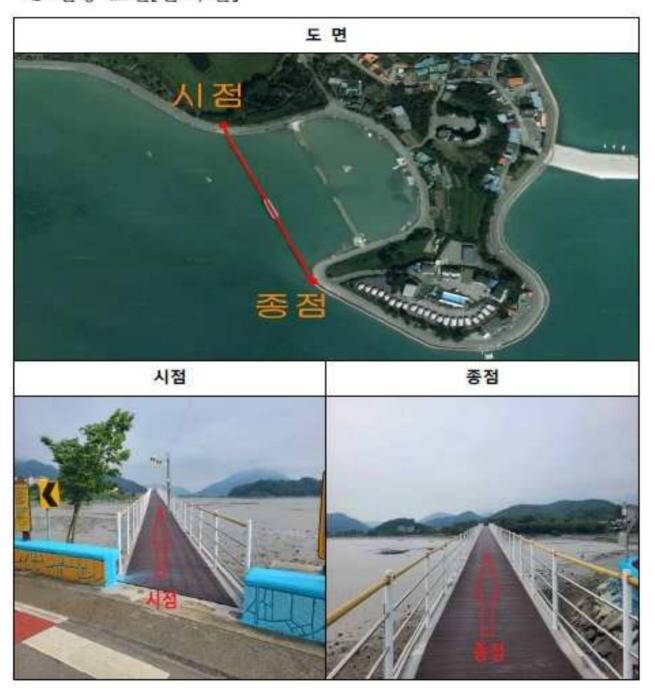
O 현황 도면[전 구간]



8. 당항만어울다리길

에비	부여			도	로구간		i	과항	기초	기초
도로명	사유	유형	도 异辩	사자점	끊지점	길이 (m)	等 (m)	행정구역	간격 (m)	번호
당항만 어 울 다리길	해인가 신책로 이름	길	지상 도로	당형리 391-2	당행의 542-23	243	2	경상남도 고성군	20	1~26

O 현황 도면[전 구간]



9. 당항만둘레길

예비	부여			도	로구간			관한	기초	기초
도로명	사유	유형	도 异常被	시작점	끟지점	길이 (m)	(m)	행정구역	간격 (m)	번호
당항만 둘레길	해인가 신책로 이름	길	지상 도로	당형리 542-23	당형리 570	1,964	2	경상남도 고성군	20	1~196

○ 현황 도면[전 구간]



10. 해지개해안둘레길

에비	부여			도	로구간			관할	기초	기초
도로명	사유	유형	左門替	사자점	끟지점	길이 (m)	(m)	행정투역	간격 (m)	기호 번호
해지개 해안 둘레길	해인가 신책로 이름	길	지상 도로	신월리 산10-7	신월리 543-1	1,429	2	경상남도 고성군	20	1~144

○ 현황 도면[전 구간]



고성군 공고 제2023-1296호

공시송달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8. 7. 고 성 군 수

- 1. 공 고 명: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2. 공고기간: 2023. 8. 7. ~ 2023. 8. 28. (21일간)
-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 4. 공고내용

처분의	제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rll 2]]	성명	강명*
대상자 	주소	경남 진주시 동진로120번길 *-*, ***호
부동산의	의표시	경남 고성군 영오면 영산리 989
처분히	-고자	그 2 005 190이(그리베그 시교내) 스 카이베이 시시이)
하는	내용	금2,985,120원(금이백구십팔만오천일백이십원)
법적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공고 기한 내 의견이 없을 시「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인
7]1	타	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 문의처: 경남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토지정보
 - T. 055-670-2693 F. 055-670-2159